

## 2. 소득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13호 1998. 3. 21

### 주요 골자

- 가.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제7조 제5호).
- 나. 부동산의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도록 함(제80조제1항).
- 다.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 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40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36퍼센트),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56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정함(제94조의2제1항).

〈재정경제부 제공〉

## 개 정 이 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중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

③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중 “공납금 납입 영수증”을 “공납금 납입 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 납부 영수증)”으로 한다.

제64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영 제 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주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것에 한한다.

제6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 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을 포

합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업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를 말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영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주택에”를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본다”를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부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중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기

준시가”로 한다.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새로운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frac{\text{양도자산의보유기간의월수}}{\text{기준시가조정월수}}$

나. 가목 외의 경우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  $\frac{\text{양도자산의보유기간의월수}}{\text{기준시가조정월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전단중 “취득 당시”를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당시”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을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하고,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가 목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⑦영 제164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86조의 제목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9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의2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0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275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36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500

3.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40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560

제9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01조의2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 신청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제20호 본문중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하고, 동조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제90조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와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별지 제35호 서식(2)에 의하며,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교부대장은 별지 제35호 서식(3)에 의한다.

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제101조제1호중 “단체퇴직 보험료 지급명세서”를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호중 “단체퇴직 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를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로 한다.

제7조제4호·제5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5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67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를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 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로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2) 제1쪽 내지 제3쪽 중 “⑮단체퇴직보험금”을 각각 “⑮퇴직보험금등”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앞쪽 중 “개인연금 공제”란을 “연금 소득공제”란으로 하고, 동란 하단의 빈란을 “투자조합 출자 등공제”란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 나호의 구비서류란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하단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육료 납부영수증”,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및 “·자비유학 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삽입하고, 동 구비서류

란의 “·개인연금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개인연금 저축 통장 사본” 하단에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삽입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제2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0호 서식의 제목 “단체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 명세서”를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로 하고, ⑧란중 “단체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료”로 하며, 동 서식 ⑯란 내지 ⑲란중 “단체퇴직보험금”을 각각 “퇴직보험금”으로 하고 ⑮란 및 ⑳란 내지 ㉑란중 “단체 퇴직보험”을 각각 “퇴직보험등”으로 하며, 동 서식 뒷면 작성요령 제목 중 “단체퇴직 보험료등”을 “퇴직보험료등”으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1호중 “단체 퇴직급여 총당금 등”을 “퇴직보험등 총당금”으로, “단체 퇴직보험 보험료 등”을 각각 “퇴직 보험료 등”으로 하고, 동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직보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퇴직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 일시금 신탁

별지 제84호 서식 앞쪽 별지 제88호 서식 앞쪽 중 하단 중앙에 다음란을 각각 신설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21호 서식(1)·별지 제21호 서식(2)·별지 제23호 서식(3)·별지 제24호 서식(1)·별지 제25호 서식·별지 제25호 서식(2)·별지 제27호 서식(3)·별지 제36호 서식·별지 제40호 서식(1) 및 별지 제40호 서식(1) 및 QUFW 제40호 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별지 제35호 서식(2) 및 별지 제35호 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 서식(3)·별지 제24호 서식(1)·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 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 발생일은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21호 서식·별지 제37호 서식·별지 제38호 서식·별지 제60호 서식·별지 제84호 서식 및 별지 제88호 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항입니다.			
61. ③항의 39란(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①항의 46란)에서 ⑤항의 53란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재하십시오.	61		
6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하십시오.	62		
63. [61란+62란]을 계산하여 기재하십시오. 총결정세액입니다.	63		
64. 「2. 금융소득금액계산명세」의 원천징수세액중 ㉓란 소득세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64		
65. [63란-64란]을 계산한 나머지를 기재하십시오.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음수(1)인 경우에는 ⑦항의 71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65		
66. 65란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십시오.	66		
67. [65란-66란]을 계산하여 기재하십시오. 자진납부세액입니다. * ⑦항 75란( )안의 총당받고자 하는 환급세액이 있으면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십시오.	67		
⑦ 소득세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항입니다.			
71. 65란이 음수(-)인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환급세액입니다.	71		
7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입니다.	72		0
73. 농어촌특별세 총결정세액입니다.	73		0
74. 제3쪽 「2. 금융소득금액계산명세」중 ㉓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농어촌특별세 기납부세액입니다.	74		
75. [73란-74란]을 계산하여 기재하십시오.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입니다.	75		환급총당 ( )
*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총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5란의 ( )안에 총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동 금액을 67란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십시오.			
76. 환급세액이 입금될 계좌를 기재하십시오.			
예입처	은행	지점	예금종류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
소득세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3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주된소득자)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세무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주택회보